

예 산 총 칙

제1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
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665,308,659	22,995,689
일반회계	547,032,997	16,410,990
특별회계	118,275,662	6,584,699
기타특별회계	12,528,857	375,865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사업특별회계 • 교통사업특별회계 •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• 기반시설특별회계 	<p>824,848</p> <p>7,534,694</p> <p>3,838,395</p> <p>330,920</p>	<p>24,745</p> <p>226,041</p> <p>115,152</p> <p>9,927</p>
공기업특별회계	105,746,805	6,208,834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 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 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	<p>30,667,022</p> <p>59,519,783</p> <p>15,560,000</p>	<p>923,834</p> <p>1,785,000</p> <p>3,500,000</p>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460,066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
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